

장학금 지급에 관한 내규

2015.09.01. 제정
2017.02.20. 개정
2017.05.01. 개정
2017.11.01. 개정
2018.01.01. 개정
2018.08.01. 개정
2018.12.01. 개정
2019.05.01. 개정
2019.11.04. 개정
2020.03.01. 개정
2020.09.01. 개정
2021.09.01. 개정
2023.03.01. 개정
2023.05.01. 개정
2024.02.01. 개정

제1조(목적) 본 내규는 본교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학금 지급기준) 교내 장학금의 지급기준 및 지급액은 별표1과 같다. 단, 지급액의 천원 미만은 절사한다.

제3조(기타사항) 기타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며 현직교사 장학금은 2021학년도 봄학기부터 시행하며 재학생 및 신입생 모두에게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장학금 지급 기준

장학금 종류	지급대상자	지급금액	비 고
인정장학금	입학생 전원	전 학기 등록금 35% 이내 (2023년 가을학기 이후 입학생 및 재학생)	
근로 장학금	학내 각종 업무에 종사하는 학생 ※ 교내 도서관, 학교홍보단 근무 등	시간당 10,000원 이내	
	부속 및 부설 기관에 종사하는 학생	해당 기관의 규정에 따름	
성적우수 장학금	매 학기 각 학과·전공 및 학년별로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지급한다. ※6학점 이상 수강한 학생에 한함 ※학과별 인원 및 예산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함	상위10%: 120만원 이내 상위20%: 70만원 이내 상위 50%: 30만원 이내	
리더쉽 장학금	학생대표	학기당 20만원	
국제화 장학금	본교와 해외 대학 간 복수학위 및 교환학생 등의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학생에게 지급한다.	본교와 체결한 협약에 따름	
글로벌리더 장학금	아래의 가), 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TOPIK 6급 이상 취득자 가)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고교 또는 대학에 상응하는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한 외국인이며 국내·외 정규 대학 졸업(예정) 자 나) 귀화하여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 으나 초,중,고교에 상응하는 정규과정을 외국에서 마친 원어민	입학금 및 첫 학기 등록금 50% 이내 감면	어학성적표는 본교 지 원시점에 유효한 성적 표 (원서접수 시점 2년 이내)



장학금 종류	지급대상자	지급금액	비 고
재외동포 및 재외국민 장학금	초,중,고,대학 전 교육과정을 해외에서 이수한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 ※ 2학기부터는 직전 학기 6학점 이상 수강, B0(3.0)이상일 때 수령 가능	전 학기 등록금 50% 이내	
IGSE 인재장학금	본교 졸업생이 본교에 타 전공 및 상위 학위과정에 다시 입학하는 경우 지급한다	입학금 면제 전 학기 등록금 50% 이내	
현직교사장학금	아래에 두 가지 모두에 해당되는 자 중에서 성적이 우수한자 가)초,중,고등학교 정교사 (기간제 교사 제외) 나)공무원 연금 또는 사학연금에 가입한 자 ※ 유아교육전공의 경우 병설유치원 재직교원만 해당 ※ 직전학기 평점: 6학점 이상 수강, A-(3.7) 이상	2~4학기 50% 이내	성적장학금 중복수령 불가
윤선생 장학금	윤선생에 재직 중인 교사가 본교에 입학한 경우 지급한다.	전 학기 등록금 50% 이내	성적장학금 중복수령 불가
교직원 가족장학금	교직원 본인 및 가족	·본인 입학 시 재학 중 등록금 100% 면제 ·자녀 및 배우자 입학 시 재학 중 등록금 80% 이내 감면	·교직원: 본교 소속 교원 및 정규직, 무기계약직 직원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재학생 가족장학금	재학생 중 부모, 형제자매가 같은 학기에 등록한 자	동 학기에 등록한 가족 중 1인의 해당학기 등록금 50% 이내 감면	가족관계증명서와 등록금 납부영수증 제출



<별표2>

성적장학금 지급기준

전공별 인원	장학금 수혜인원			비고
	최우수(120만원 이내) (상위 10%)	우수(70만원 이내) (상위 20%)	장려(30만원 이내) (상위 50%)	
40	4	4	12	
39	3	4	12	
38	3	4	12	
37	3	4	11	
36	3	4	11	
35	3	4	10	
34	3	3	11	
33	3	3	10	
32	3	3	10	
31	3	3	9	
30	3	3	9	
29	2	3	9	
28	2	3	9	
27	2	3	8	
26	2	3	8	
25	2	3	7	
24	2	3	6	
23	2	3	6	
22	2	2	6	
21	2	2	6	
20	2	2	6	
19	2	2	6	
18	2	2	5	
17	2	2	5	
16	1	2	5	
15	1	2	5	
14	1	2	4	
13	1	2	4	
12	1	1	4	
11	1	1	4	
10	1	1	3	
9	1	1	3	
8	1	1	2	
7	1	-	2	
6	1	-	2	
5	1	-	2	

<별표4>

	담당	부서장
확인		

근로장학금 신청서

성명		학번	
생년월일	년 월 일	학년/학과	
주소			
연락처	전화:	E-mail:	
근로 활동 내역			
근로 기간			
근로 시간			
근로 장소			
장학금액			지불방법※ 현금지급 () 입금 (V)
	(입금)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특이사항			
<p>상기인은 위와 같이 근로장학생으로 근무하는 것에 동의하며 장학금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 . . .</p> <p style="text-align: right;">성명: _____ (서명)</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small;">※ 본교 처음 신청인 경우 신분증(주민등록증/여권/외국인등록증) 사본 첨부 필</p>			

